「평창군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❍ 제 안 자 : 김진옥 의원
- ❍ 제안일자 : 2026. 09. 23.
- ❍ 회부일자 : 2026. 10. 08.
- ❍ 상정일자 : 2026. 10. 13.

2. 제안이유

- ❍ 평창군 출산 가정의 백일해 감염을 예방하고 임산부와 가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백일해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❍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❍ 예방접종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지원대상(안 제3조 및 제4조)
- ❍ 백일해 예방접종의 실시, 비용 지원 및 지원 횟수(안 제5조)
- ❍ 예방접종 절차 및 업무의 위탁(안 제6조 및 제7조)
- ❍ 부정하게 지원받은 예방접종 비용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(안 제8조 및 제9조)

4. 종합검토의견

❍ 본 조례안은 평창군 출산 가정의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임. 특히 지원 대상의 범위(임산부, 배우자, 부모 등)를 명확히 하고, 지원 계획 수립, 접종 비용 지원 및 위탁의료기관 운영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❍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서는 백일해를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,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 따라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감염병 예방 및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.

❍ 본 조례안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예방접종 제도를 평창군의 지역 여건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,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영유아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붙임 관계 법령

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약칭: 감염병예방법)

제24조(필수예방접종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(이하 “필수예방접종”이라 한다)을 실시하여야 한다.<개정 2010. 1. 18., 2013. 3. 22., 2014. 3. 18., 2016. 12. 2., 2018. 3. 27., 2020. 8. 11., 2023. 3. 28., 2023. 6. 13.>

3. 백일해

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업무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<개정 2018. 3. 27., 2023. 6. 13.>

□ 약사법

제86조의3(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) ①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의약품을 사용한 사람이 그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구제급여(이하 “피해구제급여”라 한다)를 지급하여야 한다.

1. 진료비
2. 장애일시보상금
3. 사망일시보상금
4. 장례비